

朝鮮 中宗·英祖代 『大學衍義補』 進講의 의미

윤 정*

- 머리말
1. 『大學衍義補』의 帝王學의 성격과 중종대 『大學衍義補』 進講
(1) 『大學衍義補』의 帝王學의 성격
(2) 중종대의 『大學衍義補』 進講 논의
 2. 英祖의 정치적 지향과 『大學衍義補』 進講의 의미
(1) 英祖의 中興主 의식과 정치적 지향
(2) 英祖의 經學과 『大學衍義補』 맺음말

머리말

『大學衍義補』는 1487년 明나라 학자 丘濬(1421~1495)이 편찬하여 孝宗에게 제왕학 교과서로 바친 책이다. 구준은 南宋 眞德秀가 편찬한 『大學衍義』가 『大學』의 8조목 중에 格物에서 齊家까지의 6조목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제외된 治國·平天下의 요체를 보충한다는 편찬목적의 제시하였다. 이 책은 당시 현실을 직시한 개혁과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논함으로써 당시 사대부들과 왕실에서 중요한 經世書로 활용되었으며, 明代 ‘弘治中興’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할 만큼 帝王學 교과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¹⁾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의 경우, 『대학연의』가 고려말에 수용되어 이후 군주의 경연 교재로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였던 반면, 성종때 수입된 『대학연의보』는 中宗·英祖·正祖의 단 3대에만 進講되고 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연의』와는 다른 『대학연의보』의 내용적 특성 및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치적 상황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중종대에 進講이 이루어진 후 장시간이 경과한 영조대에 進講이 재개된다는 사실은 영조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性理學의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해온 조선에서 학문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정책 내용은 일정한 經學的 기반을 가지고 제시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군주의 경학은 해당 시기의 정치적·사상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

* 필자 :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

1) 尹貞紛, 『『大學衍義補』研究 - 15世紀 中國經世思想의 한 分析』,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2) 주요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미 경연 텍스트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여럿 제시되었고, 『大學』과 『大學衍義』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²⁾ 그러나 이에 비해 『大學衍義補』는 그것이 가지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帝王學을 다루는 교재로서 『大學衍義補』가 가지는 특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조건 속에서 진강되고 논의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 이를 통해 영조대 정치사의 이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장에서는 『대학연의보』 체제와 서문을 통해 丘濬이 제시하는 帝王學의 특징을 살펴 보고 이어서 조선에서 『대학연의보』의 진강이 처음 이루어진 中宗代 진강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논쟁을 분석하여 경연 교재로서 『대학연의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영조대 『대학연의보』 진강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것이다. 하나는 영조가 중종을 모델로 하면서 제기하였던 중흥주의 의식과 그에 반영된 정치적 지향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영조 제왕학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大學』에 대한 이해와 『貞觀政要』·『대학연의보』 사이의 관련성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연의보』의 진강이 중종대에 이어 영조대에 재개된다는 시기적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학연의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大學類義』의 편찬을 통해 새로운 제왕학의 창출을 시도했던 정조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대학연의보』의 내용적 특징 및 이의 현실적 적용이라는 문제와 함께 추후 보완할 과제로 남겨 둔다.⁴⁾

1. 『大學衍義補』의 帝王學의 성격과 중종대 『大學衍義補』 進講

(1) 『大學衍義補』의 帝王學의 성격

여기서는 먼저 『大學衍義補』의 체제와 서문 등을 통해 그것이 지향하는 제왕학의 성격을

李範鶴, 「眞德秀 經世理學의 成立과 그 背景」, 『韓國學論叢』20, 1997.

李泰鎮, 「正祖의 『大學』 담구와 새로운 君主論」,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성균관대학 출판부, 1992.

池斗煥, 「朝鮮前期 君子·小人 論議-『大學衍義』 王安石論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9, 1993.

池斗煥, 「朝鮮前期 『大學衍義』 理解過程」, 『泰東古典研究』10, 1993.

김인호, 「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대학연의』」, 『역사와현실』29, 1998.

鄭在薰, 「조선전기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 『震檀學報』86, 1998.

3) 국사학계에서 『大學衍義補』에 대해 전적으로 다룬 논고는 아직 없으며, 동양사 연구자에 의해 15세기 중국 경제사상의 일면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세히 분석된 바 있다(尹貞紛, 앞의 논문). 그밖에 부분적으로 『大學衍義補』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金文植, 「정조의 제왕학과 『大學類義』 편찬」, 『奎章閣』21, 1998.

김문식, 「『대학유의』 편찬」,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해석사, 2000.

4) 『大學類義』에 대한 연구로는 김문식, 앞의 논문 및 앞의 책 참조.

살펴보기로 한다. 『대학연의보』는 모두 160권으로 되어 있다. 먼저 ‘前書’라 하여 ‘誠意正心之要’를 기술하였으며, 그 다음에 本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治國平天下之要’가 기술되어 있다. 본서 부분은 다시 12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주제 안에서 다시 세부 항목을 나누어 관련 사항을 배치하였다. 본문 내용은 주요 經書와 先儒의 언급을 제시하고 ‘臣按’이라 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체의 체재와 卷次는 <표 1>과 같다.

『대학연의보』의 체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체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목차 앞의 서두에 前書⁵⁾로서 ‘審幾微’의 조항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誠意正心之要’라는 표제를 통해 볼 때, 본문격인 ‘治國平天下之要’에 대한 導論 내지 緒論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말미의 ‘成功化’는 형식상 ‘治國平天下之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편목을 보면, 구체적인 조항을 열거한 앞의 내용들과 달리 聖神功化之極의 단 한 항목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이 ‘功化를 이룬다’는 데서 드러나듯이 앞에 열거된 많은 조목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 결과를 상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成功化’는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학연의보』는 체재상 서론-본론-결론이라는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재상의 특징은 다음 지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審幾微는 格心の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요, 成功化는 治平의 효과를 보충한 것이니, 補篇(『대학연의보』) 가운데도 시작이 이루어지고 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위의 기록은 정조의 지적으로서, 『大學衍義補』의 체재가 始·本·終의 3단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는 『대학』의 3綱 구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의 3강과 『대학연의보』의 체재를 대비해 보면, 前書로서 審幾微는 明明德에, 본서의 治國平天下之要是 親民(新民)에, 그리고 말미의 成功化는 止於至善에 각기 상응한다. 앞서 정조가 審幾微를 格心이라 한 것은 바로 明明德과의 관련성을 의식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은 다음 지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것(『대학연의』)이 연의한 것은 格致誠正修齊에 그치고 治平만 빠졌는데 우리 孝宗敬皇帝 때에 이르러 大學士 丘濬이 계속하여 늘려 펼치고 미비한 것을 널리 취하여 『大學衍義

5) 丘濬의 서문에서 ‘前書’는 앞서 眞德秀가 편찬한 『大學衍義』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의 ‘前書’도 그것이 다루는 條目이 『大學衍義』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볼 때 『大學衍義』의 내용을 집약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6) “審幾微, 所以補格心之闕, 成功化, 所以收治平之效, 則補篇中, 亦有成始成終之可言歟!”(『弘齋全書』 권 49, 策問2 「大學衍義補」)

〈표 1〉 『大學衍義補』의 체제와 권차

前書	誠意正心之要	審幾微	1. 謹理欲之初分 2. 察事幾之萌動 3. 防姦萌之漸長 4. 炳治亂之幾先
目次			
本書	治國平天下之要	一. 正朝廷 (1-4, 총 4권)	1. 總論朝廷之政(1) 2. 正綱紀之常(2) 3. 定名分之等(2) 4. 公賞罰之施(3) 5. 謹號令之頒(3) 6. 廣陳言之路(4)
		二. 正百官 (5-12, 총 8권)	1. 總論任官之道(5) 2. 定職官之品(5) 3. 頒爵祿之制(6) 4. 敬大臣之禮(6) 5. 簡侍從之臣(7) 6. 重臺諫之任(8) 7. 清入仕之路(9) 8. 公銓選之法(10) 9. 嚴考課之法(11) 10. 崇推薦之道(11) 11. 戒濫用之失(12)
		三. 固邦本 (13-19, 총 7권)	1. 總論固本之道(13) 2. 蕃民之生(13) 3. 制民之產(14) 4. 重民之事(15) 5. 寬民之力(15) 6. 愍民之窮(15) 7. 恤民之患(16) 8. 除民之害(17) 9. 擇民之長(18) 10. 分民之牧(19) 11. 詢民之瘼(19)
		四. 制國用 (20-35, 총 15권)	1. 總論理財之道(20-21) 2. 貢賦之常(22) 3. 經制之義(23-24) 4. 市糶之令(25) 5. 銅楮之幣(26-27) 6. 山澤之利(28-29) 7. 征權之利(30) 8. 傳算之籍(31) 9. 鬻算之失(32) 10. 漕輓之宜(33-34) 11. 屯營之田(35)
		五. 明禮樂 (36-53, 총 17권)	1. 總論禮樂之道(36-37) 2. 禮儀之節(38-40) 3. 樂律之制(41-44) 4. 王朝之禮(45-47) 5. 郡國之禮(48) 6. 家鄉之禮(49-54)
		六. 秩祭祀 (54-66, 총 13권)	1. 總論祭祀之禮(55-56) 2. 郊祀天地之禮(56-57) 3. 宗廟饗祀之禮(58-59) 4. 國家常祀之禮(60-61) 5. 內外群祀之禮(62) 6. 祭告祈禱之禮(63-64) 7. 釋奠先師之禮(65-66)
		七. 崇教化 (67-84, 총 18권)	1. 總論教化之道(67) 2. 設學校以立教(68-70) 3. 明道學以成教(71-72) 4. 本經術以爲教(73-77) 5. 一道德以同俗(78) 6. 躬孝弟以敦化(79) 7. 崇師儒以重道(80) 8. 謹好尚以率民(81) 9. 廣教化以變俗(82) 10. 嚴旌別以示勸(83) 11. 舉贈諡以勸忠(84)
		八. 備規制 (85-99, 총 15권)	1. 都邑之建(85-86) 2. 城池之守(87) 3. 宮闕之居(88) 4. 囿游之設(89) 5. 冕服之章(90) 6. 璽節之制(90) 7. 輿術之儀(91) 8. 曆象之法(92-93) 9. 圖籍之儲(94) 10. 權量之謹(95) 11. 寶玉之器(96) 12. 工作之用(97) 13. 章服之辨(98) 14. 胥隸之役(98) 15. 郵傳之置(99) 16. 道塗之備(99)
		九. 慎刑憲 (100-113, 총 14권)	1. 總論制刑之義(100-101) 2. 定律令之制(102-103) 3. 制刑獄之具(104) 4. 明流贖之意(105) 5. 詳聽訟之法(106) 6. 議當原之辟(107) 7. 順天時之令(107) 8. 謹評讞之議(108) 9. 伸冤抑之情(109) 10. 慎眚災之赦(109) 11. 明復讎之義(110) 12. 簡典獄之官(111) 13. 存欽恤之心(112) 14. 戒濫縱之失(113)
		十. 嚴武備 (114-142, 총 28권)	1. 總論威武之道(114-116) 2. 軍伍之制(117) 3. 宮禁之術(118) 4. 京輔之屯(119) 5. 郡國之守(119) 6. 本兵之栖(120) 7. 機器之利(121-122) 8. 牧馬之政(123-125) 9. 簡閱之教(126-127) 10. 將帥之任(128-131) 11. 出師之律(132) 12. 戰陳之法(133-134) 13. 察軍之情(135) 14. 遏盜之機(136-138) 15. 賞功之格(139-140) 16. 經武之要(141-142)
		十一. 馭夷狄 (143-156, 총 14권)	1. 內夏外夷之限(143-144) 2. 慎德懷遠之道(145) 3. 譯焉賓待之禮(145) 4. 征討綏和之義(146-147) 5. 修攘制御之策(148-149) 6. 守邊固圉之略(150-151) 7. 列屯遺戍之制(152) 8. 四方夷落之情(153-155) 9. 劫誘窮黷之失(156)
		十二. 成功化 (157-160, 총 4권)	聖神功化之極(157-160)

補』를 지어 治國平天下를 게시하였으니 新民의 요체로써 明德의 功을 거둔 것이다.⁷⁾

위의 기록은 萬曆 33년(1600)에 『대학연의보』를 다시 간행하면서 明 神宗이 붙인 御製序文이다. 여기서 치국·평천하의 내용이 곧 新민에 조응하는 것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연의보』가 『대학』의 3강 체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대학연의』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방법론적 시각에서 『대학』의 체계를 제시하려고 하였음을 시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한편 주제별 분량의 측면에서 보면 예제에 관한 조항(明禮樂·秩祭祀·崇教化)이 48권으로 가장 많지만, 산업·재정 부문(固邦本·制國用)이 22권, 국방 부문(嚴武備·馭夷狄)이 42권으로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두 부문에 대한 강조는 그 내용속에서 功利主義 내지는 霸道的의 성향을 떨 수 있어 도덕적 왕도정치라는 이상과 상충될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制國用的의 총론 부분은 理財之道에 대한 것인데, 理財란 곧 탄탄한 재정의 확보와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末務로 간주되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많은 양을 할애한 것은 그만큼 정치의 현실적 조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에서 수용될 당시 그 비판의 초점이 『대학연의보』가 순정하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에 집중되는 요인이 되었다.⁸⁾

이상 『대학연의보』의 체제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서문을 통해 『대학연의보』가 지향하는 帝王學의 내용 내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학연의보』는 치국·평천하에 대해 연의하는 형식을 띠면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공자의 3綱에 입각하여 『대학』의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곧 『대학연의』와 『대학연의보』가 『대학』에서 제시하는 제왕학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할 것은 『대학연의』가 『대학』을 연의하면서 治國·平天下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이유이다. 眞德秀는 서문에서 人君의 학문은 반드시 그 요체를 안 이후에 힘을 쓸 곳이 있다고 전제하고, 格物·致知, 誠意·正心, 修身·齊家의 요체를 항목별로 제시한 후, 그 도를 터득하면 治國·平天下는 그 속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⁹⁾ 곧 眞德秀는 『대학』의 8조를 格物~齊家와 治國·平天下의 두 단계로 구분하고, 후자는 전자를 통해 종속적으로 획득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구분의식은 宋代 제왕학 지침서의 변화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다. 유교에서 제왕의 정치 지침서로는 宋初까지 『書經』과 『貞觀政要』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것은 과거 모범이

7) “厥所衍者，止于格致誠正修齊，而治平獨缺。大學士丘濬，乃繼續引伸，廣取未備，爲大學衍義補，揭治國平天下，新民之要，以收明德之功。”(『大學衍義補』萬曆33年 御製序文)

8)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다룰 것이다.

9) 『大學衍義』, 「進大學衍義表」.

되는 제왕의 통치 경험을 당대 정치의 지침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송대에 性理學이 형성 발전되면서 인간의 內省을 통한 수양이 강조되었으며, 이것은 군주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心性學과 經世學의 통합을 지향하게 되었고, 군주의 통치는 결국 修己에서 출발하여 달성되는 것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大學衍義』는 이러한 흐름을 결집시킨 것으로서 이후 군주의 통치철학을 형성시키는 경연의 대표적인 교재로서 그 위치를 확립하였다.¹⁰⁾

『대학』의 8조는 군주 개인의 범위를 넘지 않는 格物~齊家の 단계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治國·平天下의 단계로 나뉘게 된다. 전자가 군주 개인의 내적인 수양 및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국가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각기 修己와 治人으로 정리된다. 修己의 완성 여부에 의해 治人의 향방과 성격이 결정된다는 시각에서 보면 치국·평천하는 종속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眞德秀가 제왕학의 교본을 만들면서 치국·평천하를 굳이 다루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 구조에 기반한 것이라 이해된다.

결국 『대학연의』에서 치국·평천하의 문제는 빠뜨린 것이라기 보다는 애초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완성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연의』를 수용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책의 자기 완결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었다. 중종 38년 11월 儒生을 친강하는 자리에서 任權은

眞西山의 衍義는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어서 八條目的 공부가 분명하게 다 그 가운데에 있으니, 제왕이 늘 보고 돌이켜 바로잡는 공부는 이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¹¹⁾

라고 하여 팔조목이 『대학연의』에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학연의』의 체계가 이와 같다고 할 때, 치국·평천하의 조항을 보충한다는 것은 실상 『대학연의』의 지향 내지 방법론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자체가 『大學』에 대한 새로운 이해체계의 수립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상 丘濬은 眞德秀의 의도 내지 이해체계를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저술이 『대학연의』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丘濬 자신의 생각은 『대학연의보』 서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 다음은 그에 관련된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인용문을 몇 개로 나누었다.

① 그러나 그것(『大學衍義』)이 연의한 것은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에 그쳤으니 아마 이는 人君에게 아주 가까운 것으로 말하고 이를 들어 治國과 平天下에 놓고자 한 것입니다.

② 신은 儒者의 학문에는 體와 用이 있으며, 體는 비록 하나의 이치에 바탕을 두지만 用

10) 李範鶴, 앞의 논문.

11) “眞西山衍義, 不偶然爲之, 八條目工夫, 昭昭然, 皆在其中, 帝王常目顧諟之工夫, 不過於此矣.”(『중종실록』 권101, 중종 38년 11월 辛丑)

은 萬事로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분석은 정밀을 다하여 어지러워지지 않아야 하고, 그런 연후에 종합은 대체를 다하여 남음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大學』의 教는 먼저 그 강령을 제시한 후에 다시 상세한 조목을 열거했으며, 그 조목 안에는 다시 각각의 조리와 절목이 있는 것입니다.

③ 眞德秀의 앞 책은 身·家를 바탕으로 하여 天下에 도달하는 것이고, 신의 이 책은 治國·平天下의 효과를 이룸으로써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의 공을 거두려는 것입니다. (…)

④ 前書는 理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이 책은 事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신의 이 책은 앞 책과 비교할 때 문장은 같지 않지만 그 뜻은 관통합니다. 文은 雅·俗을 겸하고 事는 儒·吏가 섞였지만,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여 오늘날에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¹²⁾

①에서 丘濬은 앞서 설명한 眞德秀의 방법론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곧 『대학연의』는 格物~齊家の 이치를 연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치국·평천하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이로써 보면 丘濬은 眞德秀의 체계에서 치국·평천하의 항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치국·평천하를 연의하여 보충한다는 것은 『대학』을 근간으로 제시되는 帝王學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차이를 내포하는 것이다. 丘濬은 그 차이를 ③에서 修身·齊家를 바탕으로 하여 평천하에 도달하는 방법과 治國·平天下의 효과를 이룸으로써 格物~齊家の 공을 거두는 방법으로 대비시켰다.

이것은 ②에서 體用論의 논리와 관련해서 설명되고 있다. 丘濬은 體는 비록 하나의 이치에 바탕을 두지만 用은 萬事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體用論은 근본적으로 體가 수립되어야 用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관점이며, 眞德秀가 격물~제가의 단계와 치국·평천하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치국·평천하의 효과를 통해 격물~제가의 공을 거둔다는 것은 곧 격물~제가 자체가 치국·평천하의 논리 속에 포섭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격물~제가의 요체는 치국·평천하의 실현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이어서 분석과 종합의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인식의 산물인 것이다. 그는 세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후에 이를 종합하여 대체를 잡는 방법론을 설명하

12) ① 然其所衍者，止于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蓋即人君所切近者而言，欲其舉此而措之于國天下耳。
② 臣竊以謂，儒者之學，有體有用，體雖本乎一理，用則散於萬事，要必析之極其精而不亂，然後合之盡其大而無餘。是以大學之教，既舉其綱領之大，復列其條目之詳，而其條目之中，又各有條理節目者焉。(…)
③ 眞氏前書，本之身家，以達之天下，臣爲此編，則又將以致夫治平之效，而收夫格致誠正修齊之功。(…)
④ 前書主乎理，以此則主乎事。(…)
臣之此編，較之前書，文雖不類，意則貫通，第文兼雅俗，事雜儒吏，其意皆主於衆人易曉而今日可行。”(『大學衍義補』 丘濬 序文)

고 있다. 이때 세밀한 분석은 곧 用이 萬事に 확대된다는 설명과 상응하며, 大體를 잡는 것은 곧 體가 하나의 이치에 바탕을 둔다는 것에 상응한다. 따라서 丘濬의 방법론은 결국 用을 통해서 體를 구현하는 것이므로 體의 수립을 전제하는 『대학연의』의 體用論과 상충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¹³⁾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격물~제가와 치국·평천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치국·평천하는 用으로 설명되지만 그 자체가 體를 구현하는 매개이므로 치국·평천하를 실현하는 제반 방안들은 體를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⑤에서 자신의 책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여 당장에 이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그 효용성을 제시하는 것도 이러한 방법론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연의』와 『대학연의보』의 관계는 독자적인 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정조는

瓊山(丘濬)의 학문은 前儒(眞德秀)에 비해 부족한데도 보충하여 전질을 완성한 것은 어찌 서인가. 어찌면 보충하지 않아도 闕文이 되지 않거나 보충하여도 衍文이 되지 않은 이유라도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¹⁴⁾

책문의 성격상 의문문의 형태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질문의 내용은 두 책이 독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정조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앞서 지적한 『대학연의보』가 3강령체계에 따랐다는 것은 『대학연의』의 보충서라는 성격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대학연의보』의 서두에 審幾微라는 조항을 ‘前書’라는 이름으로 둔 것은 곧 『대학연의』의 내용을 일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치국·평천하의 조목은 보충이 아니라 본령이 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연의보』에서는 국가 운영의 실무적인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는데, 이는 재정과 국방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성리학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末務的인 것, 혹은 霸道的인 것으로 흔히 비판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운영을 本務로 인식할 때 가장 중시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丘濬이 事는 儒·吏가 쉬었다고 自評한 것은 곧 이러한 실무적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연의보』는 치국·평천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적에서 찬술되었다. 이는 군주의 도덕적 수양만으로 치국·평천하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치국·평천하의 구체적인 항목에 군주의 개입이 요청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13) 이에 대하여 윤정분은 구준의 관점을 체와 용을 모두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體用兼備論으로 정리한 바 있다(尹貞紛, 앞의 논문, 30~34쪽).

14) “瓊山之學，有遜於前儒，而補成全帙，何也？豈其不補而不爲闕，補之而不爲衍者存歟！”(『弘齋全書』 권 49 策問2 「大學衍義補」)

15) 審幾微와 明明德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서는 제2장 제2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었다. 따라서 군주의 관점에서 경세를 위한 실용적인 참고서이자 자신의 주도적인 정책 운영을 뒷받침하는 전거로서 유용할 수 있었지만, 원론적인 성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순정하지 않은 책으로 비판받을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는 실제 조선에서 『대학연의보』가 수용되고 이해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중종대의 『大學衍義補』 진강 논의

조선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이해는 군주의 聖學을 돕는 방안으로 개국기부터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며, 군주의 修身을 강조하는 『대학연의』는 경연의 진강 교재로서 강조되었다. 『대학연의』는 고려말에 이미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는데, 공양왕 2년(1390)에 왕이 경연에서 『정관정요』를 학습하려 할 때, 尹紹宗은 “二帝三王의 道가 담긴 『대학연의』를 읽어 야지 唐太宗의 『정관정요』는 취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¹⁶⁾ 고려말부터 강조된 『대학연의』는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 경연의 기본 교재로 유지되었다.¹⁷⁾

이에 대해 『대학연의보』가 처음 조선에 들어온 것은 성종 25년(1494) 정월의 일이다.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安琛이 『대학연의보』를 구해 와 바치자 성종이 이를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¹⁸⁾ 그러나 곧바로 『대학연의보』의 진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대학연의보』의 진강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중종대의 일이었다. 연산군대 경연의 폐지를 경험한 뒤에 재개된 중종대의 경연에서는 특히 군주의 聖學이 강조되고 있었고, 그 반영으로서 중종 초기부터 군주 성학의 요체로 간주되는 『대학연의』의 진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정 후의 정국을 주도하던 훈구파 역시 『대학연의』의 진강에 직접 참여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군주 수신을 강조하고 있었다.¹⁹⁾

그런데 중종대에는 『대학연의』와 함께 『대학연의보』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었다. 중종 3년 반정공신의 한 사람인 成希顔은 風聞의 위험성을 논의하면서

丘濬이라는 사람은 식견이 매우 높았는데, 『大學衍義補遺』를 저술할 때 風聞의 잘못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일찍이 그것을 보고 대단히 옳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아뢰었 을 뿐입니다.²⁰⁾

16) “王欲覽『貞觀政要』, 命鄭夢周講之, 紹宗進曰: ‘殿下中興, 當以二帝三王爲法, 唐太宗, 不足取也. 請講『大學衍義』, 以闡帝王之治.’ 王然之.”(『高麗史』 권120, 列傳33 『尹紹宗』)

17) 고려말 조선초의 『大學衍義』 진강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이 참고된다.
김인호, 「여말선초 군주수신론과 『대학연의』」(『역사와현실』29, 1998)
鄭在薰, 「조선전기 『大學』의 이해와 聖學論」(『震檀學報』86, 1998)

18) 『成宗實錄』 권286, 성종 25년 정월 丁酉.

19) 『中宗實錄』 권2, 중종 2년 윤정월 壬戌.

20) “有丘濬者, 識見甚高, 撰『大學衍義補遺』, 極言風聞之非. 臣嘗觀之, 以爲甚是, 故啓之耳.”(『中宗實錄』 권5, 중종 3년 3월 辛亥)

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연산군의 寵臣으로 반정을 주도한 辛允武·朴永文 등에 대한 탄핵이 격화되고 있었는데,²¹⁾ 成希顔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風聞일 뿐임을 지적하면서 『대학연의보』를 논거로 삼고 있었다. 이는 당시 『대학연의보』를 정책 입론의 근거 자료로서 중요시하는 흐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대학연의보』는 수용 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적으로 성종이 印刊을 지시한 것에서 드러나지만, 연산군 원년 5월에 忠淸道都事로 재직하던 金駟孫이 시무 상소를 올리면서

『禮記』를 읽는 여가에 『大學衍義』를 먼저 강하고, 근세 사람 丘濬이 엮은 『大學衍義補』도 또한 마땅히 續講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正心·修身·齊家·治國의 요령이 갖추어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체득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²²⁾

라고 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대학연의보』가 『대학연의』와 함께 거론되고, 이들이 정심·수신·제가·치국의 요령이 갖추어져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大學』의 道를 실현하는 매개로서 『대학연의』와 함께 『대학연의보』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을 통해서 『대학연의보』의 구체적인 효과가 주목되는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연의』의 학습이 널리 이루어지고 『대학연의보』에 대한 이해도 진전되어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성희안의 지적은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연의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연의보』가 처음 진강된 것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록상으로는 중종 19년(1524) 7월 乙酉에 강독한 기록이 처음 보인다.²³⁾ 하지만 이것이 실제 첫 진강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²⁴⁾ 중종 37년 洪暹은 『대학연의보』 진강을 서둘러 마칠 것을 청하면서 진강이 시작된 지 30년이 다 되었다고 지적하였다.²⁵⁾ 이로 미루어 보면 대략 중종 10년 전후에 진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견되는 실록의 기록을 책의 편목과 비교하여 보면 진강 시작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대학연의보』가 여타 진강 교재에 비해 저술 시기가 멀지 않고, 또한 조선에 수용된 지도 얼마 안 되는 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책의 순서대로 진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중종 19년의 진강 주제는 銓選과 考課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대주

21)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역사와현실』25, 1997), 141~146쪽.

22) “讀『禮記』之餘, 『大學衍義』所當先講, 近世丘濬所補, 亦當續講, 其中正心修身齊家治國之要, 莫不備載, 以心會之, 以身體之, 天下無難事矣.”(『燕山君日記』 권5, 연산군 원년 5월 庚戌)

23) 『中宗實錄』 권51, 중종 19년 7월 乙酉.

24) 實錄에서 經筵 및 經筵 교재에 대해 일일이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첫 사례가 곧 첫 진강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25) 『中宗實錄』 권99, 중종 37년 9월 乙亥.

제로는 正百官에 속하며, 총론을 포함한 소주제의 순서로 본다면 14번째와 15번째에 속한다. 그리고 권차로 본다면 160권 중에서 제10권과 제11권에 해당한다. 마무리 단계에 1권 여의 분량을 진강하는 데 5개월이 소요된 것과 대비해 보면 대략 중종 10년 전후에 진강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²⁶⁾

그런데 『대학연의보』의 진강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대학연의보』가 『대학연의』에 대한 보완이라고 인식하였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양자의 차이가 드러났다. 일례로 『大學衍義補』가 진강되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종 13년 당시 柳崇祖는 『進大學三綱八目箴箋』에서 『대학』을 표장하는 과정을 논하면서 “西山은 그 뜻을 推衍하고, 丘公은 그 遺失을 補輯”했다고 하여 『대학연의보』가 『대학연의』를 보완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면서도, 『대학』의 정신이 “體를 말미암아 用에 이르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본문 明明德 장의 “精一하게 중용을 택하여 정성스럽게 지키라”는 것으로 군주 수신론을 요약하고 있다. 그의 논리는 결국 군주의 심성을 도야시키는 것이 治國의 구체적인 방안이 된다는 사림파의 입론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 그가 이 글에서 “온갖 물건을 알지만 요약할 줄 모른다”는 것은 훈구파의 정책입론을 비판한 것으로, 이어지는 新民箴에서 功利·律令刑法·食貨聚斂이 백성의 인심을 외면하면서 고혈을 굽어내는 정치로서 백성이 감복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²⁷⁾ 당시 훈구파가 연산군의 폐정을 극복하기 위한 유신정치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음을 상기하면²⁸⁾ 유송조의 논리는 당시 훈구파의 정책논리를 『대학』의 정신을 통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둘러싸고 더욱 강화될지 않을 수 없었다.

실상 體用論에 근거하여 근본의 확립에 주안점을 둔 『대학연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무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대학연의보』는 말무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나아가 두 책을 대립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내재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本末의 선후 관계에 대해 첨예하게 구분 인식하고, 경연을 군주의 聖學을 도야하는 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학연의보』의 진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더구나 책 자체가 적지 않은 분량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책의 효용성과 진강의 적절함을 놓고 정계에 이견이 생기게 되었다.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중종 24년 11월 洪彥弼과 沈貞 사이에 있었던 논쟁에서 잘 나타난다.

26) 중종 37년 9월 28일에 洪暹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당시 진강하는 1권 다음에는 한 권만 남아 있을 뿐이며, 자주 朝講에 나가면 1개월 이내에 강을 마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진강이 끝나는 것은 중종 38년 2월 13일이었다. 대략 5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인데, 그것도 중종이 진도를 빨리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정도 걸린 것이다.

27) 『中宗實錄』 권13, 중종 6년 3월 壬戌.

28) 윤정, 『조선 중종대 훈구파의 山林川澤 운영과 재정확충책』(『역사와현실』29, 1998).

① 洪彥弼: 眞西山의 『大學衍義』에는 역대 제왕의 일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귀감이 되니, 마땅히 진강해야 할 책입니다. 丘濬의 『大學衍義補』는 의논이 純正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진강한 지는 오래입니다. 卷帙이 매우 많으므로 쉽게 진강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혼자 열람하기에는 마땅하나 진강하기에는 부적합하니, 『大學衍義』를 가지고 진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② 沈貞: 언필의 말은 바로 홍문관의 뜻입니다. 『衍義補』는 의논이 광대하고 문장이 자세합니다만, 程子나 朱子가 본다면 취하는 말이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일 鄭光弼이 經筵에서 이 책으로 바꾸어 진강하자고 하였는데, “옛일의 연원을 널리 알 수 있으므로 群臣을 접대할 때에 이 책으로 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홍문관은 이 책을 支離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크게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와 작게는 세세한 일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이는 폐할 수 없습니다.²⁹⁾

위에서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하면 홍언필은 『대학연의보』는 양이 많고 순정하지 못하여 진강에 적합치 않으므로 교재를 『대학연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며, 심정은 『대학연의보』에 순정치 못한 곳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풍부하므로 진강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강 반대의 근거는 분량과 내용의 두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 분량이 많은 것은 표면적인 이유이며, 내용이 순정치 못하다는 인식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 이해된다. 여기에는 물론 『대학』과 관련된 진강 교재는 『대학연의』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홍언필은 仁宗 즉위 이후 趙光祖의 伸冤 운동을 벌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至治의 規矩는 『大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리가 모두 이 책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 眞德秀가 『대학연의』를 저술하니 정치를 하는 도리가 밝은 거울처럼 명확해져 더 보탬 것이 없습니다.³⁰⁾

위에서 홍언필이 『대학연의』에서 더 보탬 것이 없다는 견해는 앞서 인용한 사료에서 “역대 제왕의 일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지적과 상통하는 것이다. 仁宗 즉위 직후라는 시점으로 볼 때 그의 언급은 중종말까지 진강되었던 『대학연의보』를 의식한 것으

29) ① 홍언필: 眞西山『大學衍義』, 則歷代帝王之事, 無不備載, 有同龜鑑, 所當進講之書也. 丘濬『大學衍義補』, 則其論議, 有不純正處, 進講已久, 而卷帙甚多, 未易畢講. 此書自上所當覽閱, 而不合於進講, 請以『大學衍義』進講, 如何? ② 심정: 彥弼之言, 乃弘文館之意. 『衍義補』則議論遠, 文章纖悉, 然使程朱見之, 則取擇之言, 必不多矣. 前日鄭光弼, 以此書, 換講於朝經筵者, 以博古淵源, 於接待群臣, 以此講之可矣云, 而弘文館則以爲支離也. 然而大則治天下之法, 少則細微之事, 無不畢具, 不可以廢之也.”(『中宗實錄』 권66, 중종 24년 11월 癸巳)

30) “至治之規矩, 無過於『大學』, 誠正修齊治平之道, 皆載此書. 眞德秀作『大學衍義』, 爲治之道, 昭如明鑑, 無以加矣.”(『仁宗實錄』 권2, 仁宗 원년 4월 癸卯)

로 추측된다.

한편 중종의 『대학연의보』 강독이 한창 진행되던 중종 34년에 李彥迪은 『대학연의보』의 권질이 많아 연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事物과 制度에 대해서는 상세하지만 성인의 道인 明誠之旨와 精一之要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임금이 옆에 두고 한가할 적에 가끔 펴보면서 古수의 制作 規模의 장단점을 연구하면 되는 것이고 정신을 집중시켜 강론하고 窮究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³¹⁾ 경연 교재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의 입론은 홍언필의 지적과 상통하는 것으로 사림파의 『대학』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²⁾ 홍언필이 조광조와 內外從 사이이며, 기묘사화 당시에 그 일파로 지목되어 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과 이후 조광조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점, 이언적의 지적 내용은 그러한 연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정의 주장은 훈구파의 정책 입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곧 기묘사림들이 군주의 심술을 밝히는 것이 통치의 근본이라고 이해한 것과 달리 훈구파는 心術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례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경제론적 특질로 평가되는데,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적극 주장한 정광필과 심정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었다.

① 鄭光弼: 지금 연소한 신하들이 비록 財利를 俗務로 여겨 말을 하지 않지만 財利는 근본입니다.³³⁾

② 沈貞: 儒者라고 利를 말하지 않는다면 救荒·軍資는 장차 어디에 힘입을 것입니까?³⁴⁾

이들의 주장은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 곧 관료로서 국가의 운영을 담당한 입장에서 救荒과 軍資에 요구되는 재정의 확보는 절대적인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입론은 연산군 폐정을 수습하면서 山林川澤의 운영을 통해 재정확충을 모색하였던 훈구파의 정책적 입론의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³⁵⁾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둘러싼 논의는 이러한 정책 운영의 근본에 관한 입론의 차이를 담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둘러싼 양측의 입론이 상대방의 논의를 서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심정의 지적을 보면 『대학연의보』가 순정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반대로 이언적은 그것이 제도 문물에 대해 자세히 갖추고 있다는 강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경연의 핵

31) 『中宗實錄』 권92, 중종 34년 10월 甲申.

32) 이와 관련하여 이언적의 「大學章句補遺」·「續大學或問」·「中庸九經衍義」의 관련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33) “今也年少之臣，雖以財利爲俗務，而不言之，然財利本也。”(『中宗實錄』 권33, 중종 13년 5월 乙卯)

34) “儒者雖不言利，救荒軍資，將何所賴?”(『中宗實錄』 권55, 중종 20년 10월 戊申)

35) 윤정, 앞의 논문(1998).

심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서 나뉘는 것이었다. 洪彥弼이나 李彥迪은 곧 경연의 목적을 군주의 심성 도야에서 찾고 있었던 데 비하여 심정은 구체적인 정책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연의 진강 문제였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당시 정치의 요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연의보』와 『대학연의』의 방법론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림파와 훈구파 사이에 나타났던 정책론의 차이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³⁶⁾

이러한 대립속에서 중종 38년 2월에 중종은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마쳤다. 그런데 이후 영조가 다시 진강을 시작할 때까지 『대학연의보』는 경연의 교재로 채용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명종대 이후 진행되는 이른바 사림의식의 확산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림파가 『대학연의보』에 대해 순정치 못하다고 평가한 것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영조대에 다시 진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蕩平論을 제기하여 사림정치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영조의 정치적 지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영조대 『대학연의보』 진강이 재개되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英祖의 정치적 지향과 『大學衍義補』 진강의 의미

(1) 英祖의 中興主 의식과 정치적 지향

중종 이후 經筵에서는 『大學衍義』와 이를 조선화한 『聖學輯要』가 주로 교재로 채택된 반면, 내용이 순정치 못하다고 지적된 『大學衍義補』는 진강되지 않았다. 이것이 다시 경연의 교재로 등장하는 것은 영조대의 일로서 영조 13년 경연 교재를 정할 때 晝講에서 『春秋集傳』과 『心經』, 『近思錄』을 진강하고 召對에서 『大學衍義補』와 『朱子語類』를 진강하기로 하였다.³⁷⁾

『대학연의보』에 대한 저간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만큼, 영조대 다시 진강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무엇보다 영조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조는 『대학연의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영조는 동왕 16년 3월의 『대학연의보』 진강에서 그 내용이 매우 세밀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대해 시독관 徐命臣은 丘濬이 경제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

36) 이러한 차이는 중종 10년 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大學衍義補』의 진강이 기묘사화를 전후한 시점에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임을 추측케 한다.

37) 영조대 경연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두환, 「경연 과목의 변천과 진경시대의 성리학」, 『진경시대①』, 돌베개, 1998 참조.

라고 평하여 영조의 생각에 부응하였다.³⁸⁾

그런데 영조의 『대학연의보』 진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영조가 중종을 자신의 귀감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중종은 『대학연의보』를 처음 진강 교재로 채용하여 그 방대한 분량과 일부 신료들의 진강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년 간에 걸쳐 진강을 마친 바 있었다. 이 점에서 영조의 중종에 대한 평가가 『대학연의보』의 진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되는 일이다.

영조는 중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아! 興感한 室은 어느 室인가. 곧 中廟室이다. 내가 不肖하고 衰耗함에도 中興의 室에 感한 것은 또한 우연이 아니다.³⁹⁾

위의 언급을 보면 그가 중종에게서 감흥을 받은 것은 바로 中興의 군주라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정을 통해 즉위한 중종에게는 연산군의 폐정을 혁신한다는 과제가 주어졌고, 이때문에 그는 당시에 維新의 정치를 펼 中興의 군주로 간주되고 있었다.⁴⁰⁾ 영조가 중종에게서 감흥을 받았다고 한 것은 자신의 과업이 중종의 경우처럼 조선왕조를 중흥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조는 동왕 21년 『御製常訓』에서 中興之主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古人이 創業은 쉽고 守成은 어렵다 하였으니 이 말은 中興之君이 創業과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創業과 中興의 군주는 몸 자체가 勤苦하고 艱難을 두루 겪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쉽다. (하지만) 守成之君은 몸이 편안하여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어렵다.⁴¹⁾

이 글에서 創業이 쉽고 守成이 어렵다는 지적은 『貞觀政要』 君道⁴²⁾의 글을 근거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영조가 실제로 주장하려는 것은 守成에 무게를 둔 『貞觀政要』의 논지가 아니라 이를 매개로 中興이 創業과 같이 험난한 일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中興을 創業에 견주어 그에 버금가는 일임을 내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간고함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편안히 자란 守成의 군주와 달리 정치하기가 쉽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이는 창업주가 가지는 절대적 권위를 중흥의 이름으로 빌려오는 것인데, 결국 자신이 中興主로서 創業主에 버금가는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라 할 수

38) 『英祖實錄』 권51, 영조 16년 3월 甲子.

39) “噫! 興感之室, 何室? 卽中廟室也. 予不肖衰耗, 感於中興之室, 亦非偶矣.” (『御製年代龜鑑』, 「御製年代龜鑑序」)

40) 이를 둘러싼 훈구파와 사림파의 시국인식에 대해서는 윤정, 앞의 논문(1997), 155~173쪽 참조.

41) “古人云: ‘創業易, 守成難’, 而此中興之君與創業同. 此何則創業中興之君, 身自勤苦, 備經艱難, 故其治也易, 守成之君, 身處便安, 莫知其艱, 故其治也難.” (『御製常訓』, 「御製常訓序」)

42) 『貞觀政要』 권1, 君道 1.

있다.

영조가 中興主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과 중종을 연결하는 데에는 私邸에서 자랐으며 많은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寶位에 올랐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정쟁 속에 끊임없는 위협을 느끼며 자랐거니와 중종 역시 연산군의 독단적인 정치 운영속에 자신이 언제 역모에 연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동적인 정치변동 속에 왕위에 올랐다. 이 점이 자신의 艱苦함을 내세우는 근거이자 자신을 중종과 연결짓는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권력의 명분과 관련하여 中興이라는 이념으로 연결지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조가 중종반정 후 폐위된 中宗妃 愼氏를 복위시킨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다.⁴³⁾ 신씨는 중종이 大君으로 있을 때의 부인으로서 중종의 즉위식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愼守勤이 반정 공신들에 의해 처형되었기 때문에 즉위한 지 얼마 후에 공신들의 주장에 의해 出宮되었다. 이후 새로 맞이한 章敬王后가 서거하자 潭陽府使 朴祥和 淳昌郡守 金淨이 신씨의 복위를 청하여 정계에 일대 논란을 불러왔으나 신씨는 복위되지 못하였다. 또한 숙종대에도 魯山君의 복위와 愼氏의 복위가 함께 추진되었으나 노산군 복위만 이루어지고 신씨 복위는 좌절된 바 있었다.⁴⁴⁾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영조는 자신의 조치가 列聖朝에서도 하지 못한 일로서 자신이 비로소 행하였음을 내세우고 있었다.⁴⁵⁾ 기묘사화 이후 신료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신씨 복위를 단행한 것은 영조가 혁신적인 정치를 결행할 수 있는 中興主로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반드시 蕩平하는 다스림을 이룬 다음에야 국가의 中興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⁴⁶⁾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조의 중흥주 의식은 자신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탕평정책의 표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흥의식은 均役法과 같이 오랜 기간 논의되었으나 실행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으며, 『續大典』과 같은 국가의 典章 制度에 대한 更張으로 이어졌다. 성종대에 『經國大典』이 완성된 이후 법령체계는 祖宗成憲으로서 『경국대전』의 절대적 권위를 전제한 위에서 그보다 법적 규정력이 낮은 續錄과 受教集의 형태로 보완되었다. 그러나 受教集의 경우 각 사례에 해당하는 조치를 모았기 때문에 보편화에 문제가 있거나 法意에 따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이러한 점에서 영조의 『속대전』 편찬은 국가체제를 更張하는 大典의 편찬을 꾀한 것으로,

43) 『英祖實錄』 권49, 영조 15년 5월 己未.

44) 『肅宗實錄』 권32, 숙종 24년 10월 乙丑.

45) 『英祖實錄』 권91, 영조 34년 5월 甲午.

46) 『英祖實錄』 권24, 영조 5년 9월 癸卯.

47)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참조.

이는 곧 새로운 정치의 모색, 다시 말해 중흥의 이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대전』 서두에 붙인 御製序를 통해 잘 드러난다. 영조는

續典을 편찬하고자 한 것은 지금 갑자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에 兩朝에서 先正이 獻議한 것이다. 지금 또한 상황이 없지만 다시 언제를 기다릴 것인가.⁴⁸⁾

라고 하면서 前代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을⁴⁹⁾ 이번에 자신의 결단에 의해 행하게 되었음을 과시하고 있다.

『속대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御製序가 後昆, 곧 후대 왕들에게 勉勅하는 卷首와 群工, 곧 百官들에게 다시 勅하는 小識의 두 편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영조가 『속대전』 서두에 후대 왕들에게 유시하는 글을 실어 놓은 것은 『속대전』 편찬의 이념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글의 말미에서 “아! 나의 후손들이여,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말뿐인 가르침이라 하지 말고 訓勅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⁵⁰⁾라고 맺고 있는 것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이는 창업주가 수성을 담당할 후대 왕들에게 유시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의식은 각 典의 서두에 각각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내용을 직접 적어 놓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⁵¹⁾

한편 百官에게 諭示하는 小識에서는 “이후로 비록 勅教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金石의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不刊의 법문으로 만든 것이면 六曹와 京外에서 제각기 거행하고 混錄하지 말도록 하여 浩繁함을 없애라”⁵²⁾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續大典』을 숙종·영조대의 앞선 受教集과 동일한 법전으로 인식하여 추상화의 정도가 다른 조항을 마음대로 增削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續大典』을 『經國大典』에 연속되는 하나의 大典으로 行用되도록 하려는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은 중흥주 의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중흥주 의식에 기반한 『속대전』의 편찬은 寬大한 刑政이라는 이념으로 표현되었고, 거기에 『대학연의보』가 논거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영조 16년 4월 『속대전』 편찬을 위해 召對에서 영조는 文義에 따라 歷代의 法文을 논하면서

創業하거나 中興한 임금은 번번이 寬大한 것을 숭상하였으므로 나라의 복이 이어졌으나,

48) “欲撰續典，非今億料，與昔兩朝，先正獻議，今又未遑，復待何時？”(『續大典』「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

49) 이와 관련하여 숙종조에 朴世采가 시무 12조를 올리면서 續大典의 편찬을 건의한 바 있다(『肅宗實錄補遺』 권19, 숙종 14년 6월 乙卯).

50) “噫我後昆，其可忽乎！莫曰言教，式體訓勅。”(『續大典』「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

51) 吏典은 “一心乃公爲官擇人”，戶典은 “均貢愛民節用蓄力”，禮典은 “修舉五禮無墜舊典”，兵典은 “愛恤武士以嚴職衛”，刑典은 “大公欽哉勉守法文”，工典은 “勤於職任飭礪百工”이라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52) “此後，雖有勅教者，非在於金石之典，作爲不刊之文，則六曹京外，自各舉行，俾勿混錄，去其浩繁。”(『續大典』「御製續大典小識復勅群工」)

후세의 빨리 망한 나라는 늘 가혹한 법에 말미암았으니, 지금 이 글(『續大典』)을 纂修하는 자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 漢나라 文帝가 이미 肉刑을 없앴으므로 丘濬은 사람들이 그 몸을 보전하고 그 형체를 잘리지 않은 것이 文帝의 덕이라고 하였다. 한 문제 때에 이미 육형을 없앴으나, 司馬遷은 漢나라 武帝 때에 오히려 그 형벌을 받았다. 한 문제는 이미 없었는데 한 무제는 다시 썼으니, 어찌 후세의 龜鑑이 아니겠는가.⁵³⁾

라고 하였다. 위에서 영조는 創業主와 中興主의 공통점으로서 관대한 형정을 제시하였고, 그 사례로서 漢 文帝가 肉刑을 없앤 것을 들었다. 이때 한 문제의 관대한 조치가 가지는 의미를 『대학연의보』의 평가를 빌어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⁴⁾ 이것은 『대학연의보』가 영조의 中興主 의식과 『속대전』 편찬의 저변을 이루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위의 지적은 『속대전』 서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곧 御製卷首에서는 “자식에 좋을 행하도록 訓勅하는 것은 寬厚하라는 것이다”⁵⁵⁾라고 하여 『속대전』 편찬의 의의를 寬大한 刑政의 구현임을 천명함과 아울러 후대 왕에게 관대한 정치의 준수를 訓勅하고 있었다. 이러한 훈칙은 文帝의 아들인 武帝가 文帝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司馬遷에게 肉刑을 가했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증중에 대한 인식, 증중비 愼氏의 복위, 그리고 『속대전』의 편찬 등에서 드러나는 영조의 증흥주 의식과 정치적 지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조가 자신을 증흥주로서 강력하게 자처하는 것은 체제의 재정비를 모색함과 아울러 창업주의 권위를 가탁하면서 자신이 정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정치적 지향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영조의 정치적 지향은 경학의 측면에서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다음 절에서는 영조 경학의 내용을 통해 『大學衍義補』 진강의 의미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2) 英祖의 經學과 『大學衍義補』

영조는 정치적으로 증흥주 의식을 표방하면서 이에 부여되는 체제 정비의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연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⁵⁶⁾ 이때 영조는 군주의 도덕적 함양을 강조

53) “勗業中興之君，每尙寬大，故國祚綿遠，後世促亡之國，常由苛法，今之纂修此書者，宜以此爲念。(…) 漢文帝既法肉刑，丘濬所謂，人得以全其身，不絕其類者，文帝之德，而漢文之朝，既除肉刑，然司馬遷在漢武之時，猶被其刑，漢文既去之，漢武復用之，豈非後世龜鑑?”(『英祖實錄』 권51, 영조 16년 4월 丁亥)

54) 이 평가는 『大學衍義補』 권102 愼刑憲 定律令之制조에 보인다. 丘濬은 문제의 육형 금지 조치에 대해 “自是以來，天下之人犯法者，始免斷支體刻股月夫，百世之下，人得以全其身，不絕其類者，文帝之德，大矣”라고 평하였다.

55) “勅子爲善，寬也厚也。”(『續大典』 「御製題續大典卷首勅後昆」)

56) 제위 52년간 확인되는 것만도 3458회에 달하는데 이는 왕조 일대에 최다였으며, 1년 평균 66회, 한 달 평균 5회로서 빈도상으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고 한다(권영웅, 「朝鮮 英祖代의 經筵」, 『동아연구』

하는 전통적인 경연 교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군주의 적극적인 정치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종래 경연 교재로는 채용되지 않았던 책들까지 적극 강독하는 태도를 보였다.

영조의 경학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대학』이었다.⁵⁷⁾ 영조는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경서들을 간행하면서 직접 序文을 붙이곤 하였는데, 동왕 34년 『大學』을 간행하면서 서문을 붙였다. 그런데 영조는 朱子가 大學章句序를 써서 학문의 도가 상비되어 한마디도 더 보탬 것이 없다고 하였다.⁵⁸⁾ 그러면서도 새로 서문을 지어 붙였다는 것은 그가 『대학』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주자와 완전히 합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영조의 御製大學序에는 『대학』의 이해에 관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인다. 영조는 『대학』의 3綱 8條를 제시한 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아, 明德은 어디에 있는가? 곧 나의 一心에 있다. 明明德의 工은 어디에 있는가? 역시 나의 一心에 있다. (….) 三代 이후로 師道가 아래에 있고 學校가 흥기하지 않아 灑掃의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므로 筋骸가 이미 강해지고 利欲이 交中하여 나에게 있는 明德이 스스로 밝아지지 못하였다. (….) 능히 그 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그를 명하여 億兆의 君師로 삼는다.⁵⁹⁾

위의 지적에 나타난 영조의 『대학』 이해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대학』의 내용에 대해 明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는 明德이 8조를 실현하는 본령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정조에게서도 발견되는데, 정조는 大學一書의 요지가 3綱 8條에 벗어나지 않으며 3강은 8조의 버리가 되고 明德은 또 3강의 버리가 된다고 지적하고, 朱子가 『대학』에 序를 붙이면서 明德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⁶⁰⁾ 정조의 지적은 영조가 『대학』에 새로이 서문을 붙이면서 明德을 강조한 의미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명덕의 실현을 위해 군주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명덕이 자신의 일심에 있다고 지적한 뒤 師道가 아래에 있어서 명덕이 밝아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곧 자신이 君師로서 명덕을 밝혀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말미의 입론은 자신이 君師로서 정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곳에서도 보인다. 영조 51년 12월 영조는 세손과의 晝講 자리에서 세손에게 “堯舜孔孟 이후로 한 사람도 大學의 道를 행한 자가 없는 것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졌다.⁶¹⁾ 이 질문은 御製大學序

17, 1989).

57) 李泰鎮, 「正祖의 『大學』 담구와 새로운 君主論」,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1992.

58) “其學問之道, 紫陽朱夫子序文詳備, 以予蔑學, 何敢加一辭?” (『大學』 「御製大學序」)

59) “噫! 明德在何? 卽在我一心. 明明德之工在何? 亦在我一心. (….) 三代以後, 師道在下, 學校不興, 莫能行灑掃之教, 故筋骸已強, 利欲交中, 在我之明德, 不能自明. (….) 一有盡其性者, 天必命之, 以爲億兆之君師.” (『大學』 「御製大學序」)

60) 『弘齋全書』 권67, 「經史講義 大學」

의 지적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조의 『대학』 이해는 앞서 진행된 『대학연의보』의 진강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영조가 明德을 강조하고 자신을 君師로서 자임하는 것은 『대학연의보』의 입론과 상통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학연의보』는 治國平天下之要의 앞에 誠意正心之要로서 審幾微의 장을 두었고, 말미에 成功化의 장을 두었다. 실상 古本『大學』에서 格物致知의 내용이 결락되어 있었고, 이를 朱子が 채워넣어 ‘補亡章’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8조목 체제는 주자의 『대학』이해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대학연의보』가 誠意正心에서 시작하여 聖神功化之極이라는 成功化의 장에서 마무리하였다는 것은 『대학』의 3강과 조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審幾微’ 조항은 군주의 明德을 밝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審幾微라는 명칭은 『大學章句』의 ‘以審其幾’에서 따온 것으로,⁶²⁾ 모두 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利欲이 처음 나뉘는 것을 조심한다(謹理欲之初分).
- ② 일의 기미가 싹터 움직이는 것을 살핀다(察事幾之萌動).
- ③ 간사한 맹아가 점차 자라는 것을 막는다(防姦萌之漸長).
- ④ 治亂의 기미가 선행하는 것을 밝힌다(炳治亂之幾先).

위에 제시된 내용들은 군주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단서를 통찰하여 예방하는 요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丘濬은 誠意正心之要로만 제시하였을뿐 明明德과의 관련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⁶³⁾ 내용적으로 明明德과 상통한다. 『대학장구』에서는 明明德에 대해

明德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바 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衆理를 갖추고 있고 萬事に 응하는 것이다. 다만 氣稟에 구애된 바와 人欲에 가리운 바가 되면서 때로 어두운 적이 있으나 그 本體의 밝음은 일찍이 쉬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가 마땅히 그 發하는 바를 인하여 마침내 밝혀서 그 처음을 회복하여야 한다.⁶⁴⁾

라고 하였다. 주자는 곧 明德은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氣稟과 人欲에 가려 어두워진 것을 다시 밝혀 회복하는 것이 明明德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丘濬은 審幾微의 서두에서 眞德秀의 『대학연의』에서 誠意正心の 방안으로 제시한 崇敬畏와 戒逸欲에 대

61) 『日省錄』, 영조 51년 12월 庚午(27일).

62) “故必謹之於此，以審其幾焉。”(『大學』第六章 釋誠意 注)

63) 丘濬은 審幾微 서두에서 朱子의 誠意 항목에 審幾의 구절이 있음을 밝혀 놓았다.

64) “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但爲其稟所拘，人欲所蔽，則有時而昏，然其本體之明，則有未嘗息者，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以復其初也。”(『大學章句』)

해 언급한 뒤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天下의 이치는 둘이니善과惡일 뿐이다. 善은 天理의 本然이며, 惡은 人欲의 邪穢이다. 이른바 崇敬畏라는 것은 天理를 존속시키는 것을 이름이요 戒逸欲이라는 것은 人欲을 막는 것을 이름이다. 그러나 일이 현저해진 것에 공을 들이는 것은 幾微의 초반에 살피는 것이 더욱 쉽게 노력할 수 있다는 점만 같지 못하다.⁶⁵⁾

위에서 丘濬은 眞德秀가 제시한 崇敬畏와 戒人欲의 논리를 『大學章句』의 明明德 설명에 맞추어 해석한 뒤, 실제 일이 분명해진 뒤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기미가 보일 때 살피며 미리 조처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丘濬의 ‘審幾微’ 조항이 『대학』의 明明德의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明德을 밝히는 방법의 차별성이다.

일이 현저해진 뒤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 방향을 조언하는 신료들의 역할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丘濬이 제시한 審幾微는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살피는 것이므로 군주의 통찰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군주가 우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군주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된다. 이것은 영조가 제시한 신료들을 지도하는 君師의 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조의 『대학』 이해는 『대학연의보』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상 영조는 일찍부터 군주 주도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경학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위 초반 영조가 경연에서 특별히 감흥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貞觀政要』였다. 영조 10년 12월 영조는 『정관정요』를 강독한 후 後序를 지어 興感의 뜻을 표하였다. 영조가 경연 교재에 대해 서문을 지어 흥감을 표하는 것은 동왕 8년에 『성학집요』에 대해 서문을 지은 것에 이은 두번째의 일이었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려말 성리학의 이해의 진전과 함께 『정관정요』는 帝王學의 교재에서 배제되었다. 이 때문에 『정관정요』가 경연 교재로 채택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에 대해 영조가 『정관정요』를 간행하고 후서까지 붙이는 것은 그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하는데, 그 핵심은 군주의 정치적 주도권을 강조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동왕 31년 세자에게

오늘날의 조정 신하들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나와 네가 국사를 하지 않는다면 朝鮮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관정요』는 바로 당나라 太宗이 高宗을 가르친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써 읽어야 한다.⁶⁶⁾

65) “蓋天下之理二，善與惡而已矣。善者，天理之本然；惡者，人欲之邪穢。所謂崇敬畏者，存天理之謂也；戒逸欲者，遏人欲之謂也。然用功于事爲之著，不若察于幾微之初，尤易爲力焉。”(『大學衍義補』「誠意正心之要」〈審幾微〉)

라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영조가 세자에게 『정관정요』의 탐독을 권하는 것은 믿을 만한 신하가 없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었다. 이것은 결국 신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정치를 주도해 나갈 것이며, 세자에게도 그러한 지향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향과 맞물린 구체적인 방법론은 行遠登高의 논리였다. 行遠登高란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야 하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군주 중심의 통치를 지향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주의 수신을 통해 이상을 실현한다는 논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신료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정책 결정자로서 군주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영조는 「御製貞觀政要後序」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이미 上聖의 자질을 갖춘 것이 아니라면 學問의 道는 마땅히 얇은 곳을 통해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까운 것을 통해 먼 곳에 이르러야 하니 鑑戒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三代之 커다란 다스림을 漢唐의 仁을 차용한 정치에 비한다면 王霸의 구분이 흑백처럼 판연하게 나타난다. (…)
그 涼德으로 인하여 다스림의 효과를 듣지 못했으니 漢唐에 비하더라도 역시 멀다.⁶⁷⁾

위의 언급을 보면 三代之 정치를 이상으로 삼고 漢唐의 정치는 霸道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王霸論的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上聖이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자신의 다스림이 漢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그는 三代之 정치를 이상으로 삼지만 현실적인 정치의 治術은 漢唐을 모범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영조가 감흥을 받았다는 명나라 憲宗의 「貞觀政要序」에서도 보인다. 곧 그는 서문 말미에도 “以其可爲行遠登高之助也”라고 피력하였다. 또한 吳澄의 「貞觀政要集論題辭」에도 “譬之行遠，必自邇，譬之登高，必自卑”라고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行遠登高의 논리가 『정관정요』를 수용하는 제왕학의 요체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요점은 당나라 태종을 모델로 한 군주 중심의 통치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영조의 경학에서 『대학』에 대한 이해는 『정관정요』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음 지적은 그러한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66) “今日朝臣，無一可恃，非予與汝爲國事，則其於朝鮮何? 『貞觀政要』即太宗教高宗者，汝須縮覽。”(『英祖實錄』 권85, 영조 31년 9월 辛巳)

67) “旣非上聖之資，則學問之道，當迨淺及深，迨近而至遠，可不鑑戒也哉! (…)
將三代之宏治，比漢唐之借仁，王霸之分，判若黑白。 (…)
因其涼德，治效未聞，比諸漢唐，其亦遠矣。”(『貞觀政要』 「御製貞觀政要後序」)

하나는 오늘에 祖孫이 서로 권면하는 뜻이고, 하나는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고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義이다.⁶⁸⁾

위의 지적은 영조가 동왕 51년 세손과의 『대학』 강독을 마치고 간행한 『御製祖孫同講大學文』의 일부이다. 여기서 영조는 『대학』의 의미와 관련하여 行遠登高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동왕 34년의 어제대학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서 초기에 『정관정요』를 통해 제시했던 제왕학 논리를 『대학』에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대학연의』의 등장과 함께 『대학』과 『정관정요』가 서로 대비되었던 기존의 제왕학과 비교할 때 제왕학에서 방법론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대학연의보』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제1장 제1절에서 지적하였듯이 구준은 『대학연의보』의 서문에서 理에 중심을 둔 『대학연의』에 대해 事に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事에는 儒·吏가 섞였지만 그 뜻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여 오늘날에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었다. 『대학연의』가 高遠한 理를 직접 지향한 것이라면 『대학연의보』는 卑近한 事를 통해 그 목표로 나아간다는 의미인 것이다. 『대학연의보』의 체재 역시 이러한 방법론을 반영하고 있다. 본서인 治國平天下之要是 통치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成功化로 귀결된다. 이것은 行遠登高의 논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라 이해된다. 이 점에서 『대학연의보』에 대한 이해는 『정관정요』의 방법론을 『대학』의 제왕학에 수용하는 영조 통치 철학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상 영조는 즉위초부터 『대학연의보』를 알고 있었다. 그는 동왕 8년 『성학집요』를 강독하는 자리에서 구준의 『대학연의보』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지만 『성학집요』만큼 긴요하고 절실하지는 못하다고 하였다.⁶⁹⁾ 이것은 일견 『대학연의보』에 대한 소극적 평가로 보이지만, 영조가 李珣과 『성학집요』에 대해 격찬하는 자리였음을 고려하면, 비교 대상으로 『대학연의보』를 제시한 것 자체가 그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대학연의보』의 진강은 영조 13년에 시작되었으며, 동왕 16년까지 진강 사실이 확인된다. 앞서 동왕 4년에 『대학연의』가 진강되었고, 동왕 7년부터 『성학집요』가, 동왕 10년에 『정관정요』가 강독되었다.⁷⁰⁾ 이들이 제왕학 교과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 『대학연의』에서 출발하여 『대학연의보』의 진강에 이르는 과정은 전통적인 제왕학에서 출발한 영조가 새로운 제왕학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조 34년 「御製大學序」

68) “一則於今日祖孫相勉之意，一則升高必自卑，行遠必自邇之義也。”(『御製祖孫同講大學文』)

69) 『英祖實錄』 권31, 영조 8년 정월 丙寅.

70) 영조 전반기 경연의 전개와 진강 책자에 대한 정리는 鄭景姬, 「英祖前半期(1724~1748년) 중앙학계와 英祖의 性理學 이해」, 『韓國史研究』103, 1998 참조.

의 찬술은 그러한 제왕학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기반은 바로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대학연의보』가 영조의 제왕학에 끼친 영향은 영조의 계승자인 정조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邱氏의 속편은 (『대학연의』의) 결손된 것을 보충하면서 古昔 이래 經·傳·子·史 가운데 治國·平天下란 두 조항에 붙일 수 있는 말은 모조리 수록하였다. 이리하여 후세의 정치하는 자가 用人·理財·安民·禦賊의 정치에 있어서 만나는 입장에 따라 그 유형을 선택할 때에 고사와 時宜를 책 속에서 일목 요연하게 보도록 하였으니, 오직 선택하여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 공이 어찌 크지 않으랴. 그러나 이 책이 지어진 지 이미 수백 년이 되었으나 세 상에는 善治가 없고 여전히 옛날과 같다.⁷¹⁾

위에서 정조는 『대학연의보』가 治國·平天下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善治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때 성리학에서 말하는 善治가 궁극적으로는 三代의 이상적 정치를 지향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정조는 구체적인 통치를 통하여 이상적인 정치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구준의 제왕학 방법론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御製祖孫同講大學文』의 찬술에서 드러나듯이 영조의 제왕학은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강력하게 전수되었다. 그러한 정조가 일찍부터 『대학연의보』에 주목하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한 것⁷²⁾ 역시 영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바로 영조의 제왕학에 있어서 『대학연의보』가 미친 영향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는 經學에 반영된 영조의 통치철학과 『대학연의보』의 진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조는 『정관정요』를 통해 行遠登高의 방법론을 채용하는 한편, 『대학』을 통해 明德을 밝히는 君師로서 자임하였다. 그의 경학은 전자의 논리가 후자에 수용되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학연의보』가 제시하는 방법론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대학연의보』의 진강은 영조의 제왕학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71) “邱氏之編，追補其闕，則凡從從古以來，經傳子史之言，可附於治平二條者，於是盡之矣。使後之制治者，其於用人理財安民禦賊之政，隨其遇而揀其類，則故事時宜，無不開卷瞭然，惟在審擇而舉措之耳，其爲功豈不大哉！第此書之作，蓋已累百年，而世無善治，猶夫前日。”(『弘齋全書』 권49 策問2 「大學衍義補」)

72)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金文植, 앞의 논문(1998), 66~70쪽 참조.

맺음말

이상에서는 조선 영조대 『大學衍義補』가 진강되는 것의 정치사상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學衍義補』는 眞德秀의 『大學衍義』가 『大學』 8조 중에서 治國·平天下의 조항을 다루지 않았던 것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저술된 것이지만, 실제 체재나 방법론상에서 『대학연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연의보』는 서두에 審幾微의 조항을 두었고 말미에 成功化의 조항을 두어 실제로는 孔子가 제시한 明明德·新民·止於至善의 3綱 체재를 지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내용적으로 보면 재용과 국방에 대한 내용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이 파악된다.

또한 丘濬은 서문에서 『대학연의』가 體用論의 시각에서 體가 바로 서야 用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格物~齊家를 體로, 治國·平天下를 用으로 파악한 것에 대해 자신의 방법론을 用의 실행을 통해 體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연의보』에는 末務的인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도 적극 수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치국·평천하의 구체적인 항목에 군주의 개입이 요청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에서 『대학연의보』를 수용한 것은 성종대였으나 실제 진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종대의 일이었다. 중종대의 진강은 대략 중종 1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중종 말년까지 30년 가까운 기간을 소요하였다. 『대학연의보』의 진강은 책의 효용성과 진강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사림파는 이 책이 분량이 많고 순정치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군주의 聖學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강에 반대하였지만, 훈구파는 군주의 心術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국가 운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역대의 제도와 문물을 풍부하게 수록한 『대학연의보』의 진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 중종은 『대학연의보』의 진강을 완료하였지만, 중종대 이후 영조가 재개할 때까지 『대학연의보』는 경연에서 강독되지 못하였다.

『대학연의보』가 다시 경연에서 진강된 것은 영조대의 일이었다. 영조는 중흥을 創業에 건주어 강조하면서 자신을 중흥의 군주로 제시하였다. 그는 중흥의 이념과 연계하여 중종에게서 감흥을 받았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영조는 中興主로서의 위상을 실증하기 위해 列聖朝에서 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실행하고자 하였는데, 中宗妃 愼氏를 복위한 일과 『續大典』의 편찬은 그 산물이었다. 특히 『속대전』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영조의 지향은 『대학연의보』의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제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영조가 자신을 中興主로서 강력하게 자처하는 것은 체제의 재정비를 모색함과 아울러 창업주의 권위를 가탁하면서 자신이 정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정치적 지향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經學의 측면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영조는 제왕학의 기본으로 『대학』을 중시하였으며, 『대학』 帝王學의 방법과 관련하여 明德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조 자신이 君師로서 政치를 주도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근거였다. 제왕학 방법론은 『대학연의보』의 이해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군주가 名덕을 밝히는 방법론은 『대학연의보』에서 誠意正心之要인 審幾微에서 제시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군주의 직접적인 통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사실 영조는 초기부터 군주 주도의 政치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관정요』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그것은 漢唐을 우선적 추구 대상으로 삼아 군주 주도의 政치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行遠登高의 논리로 표방되었다. 그런데 영조 52년에 찬술된 『御製祖孫同講大學文』에서는 行원등고의 논리가 『대학』의 체계속에 수용되었는데, 이것은 『대학연의보』의 체재가 지향하는 방법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양상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제왕학의 성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학연의보』의 진강과 이해가 밀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영조의 이해는 정조에게로 계승되었다.